

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관련 공청회 주요토론내용

- 일 시 : 2005년 3월 17일
- 장 소 :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

(1) 유해성 심사제도 관련

- 현행 3개 항목을 13개로 늘리는데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함(일본의 경우 1개 항목을 늘리는 데 10년 검토)
- 환경부 위주의 환경독성보다 노동부 위주의 급성독성에 대한 보완이 더 시급
- 국내의 기존화학물질수가 EU나 미국, 일본 등에 비해 훨씬 적으므로 해외에서는 기존물질로 인정되어 자유롭게 유통되던 물질이 국내 수입시 신규물질로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
- OECD 국가들 대부분의 경우 제조자와 신고자가 일치하나 국내의 경우 거의 신고자는 수입자이므로 관련서류를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음
- 국내에서는 GLP 생체독성 시험기관이 1곳뿐이므로 검사가 지연되고 비용도 일본기준으로 1건당 1천만~1천 8백만원에 달하여 부담이 됨
- 해외 GLP 기관 검사자료를 맹신하는 태도는 버려야 함. 해외 GLP 기관에 대한 정기적 사찰을 통해 국내 GLP 기관과의 제휴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
- 검사항목을 늘리려면 먼저 그것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고, 그 후 기업들이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만 1년 정도가 필요하므로 내년 시행에는 무리가 따름

(2) 제조, 수입 화학물질의 확인 관련

- 동일 제품의 개선에 따른 제품명 변경때마다 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.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은 제품이 개선되어도 동일한 제품명을 유지하는 실정임
- 기존화학물질의 기준년도를 1991년으로 못 박지 말고 유연하게 적용할 것
- 자진확인에 있어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할 것
- 면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함
- 최초신고자에 대한 권리보호조치가 필요

(3)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사업장별 공개

- 공개 여부를 판단할 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나 심의기준에 있어서의 객관성 유지 여부
- 환경가이드라인 보강등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공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
- 제공된 자료의 2차 공개나 홍보, 광고 목적의 이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비밀준수약정 등
- 배출량이 큰 대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배출량 공개에 있어서의 원단위 개념 도입

(4) 유독물 취급시설 정기점검

(5)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자체방제계획의 수립

- 사고대비물질 수를 늘리되 기준을 각각 차등적용토록
- 자체방제계획 면제 대상법규의 추가
- 기업이 수립하는 자체방제계획뿐만 아니라 공단지역에 대한 '지자체방제계획', '국가방제계획' 등의 수립도 필요함 끝.